

2025-11-10

(25-7358)

페이지: 1/1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본: 영어

통보**부록**

다음의 2025년 11월 10일자 통보문은 뉴질랜드 대표의 요청으로 회람한다.

제목: 기존 규제 요건에 대한 변경안은 장비에너지효율(E3) 결정 규정 영향 평가서 – 냉장 진열 및 보관 캐비닛 (2017-11, 152페이지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:
<http://www.energyrating.gov.au/news/decision-regulation-impact-statement-%E2%80%93-commercial-refrigeration>.

부록 사유:	
[]	의견 마감일 변경 - 날짜:
[X]	통보 조치의 채택 - 날짜: 2025-10-13
[X]	통보 조치의 공표 - 날짜: 2025-10-16
[X]	통보 조치의 시행 - 날짜: 2026-05-01
[X]	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 ¹ : https://legislation.govt.nz/regulation/public/2025/0227/latest/LMS645427.html?search=ts_act%40bill%40regulation%40deemedreg_Energy+Efficiency+(Energy+Using+Products)+Amendment+Regulations+2025_resel_25_a&p=1
[]	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- 날짜: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
[]	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¹ :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 (해당될 경우):
[]	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확인 ¹ :
[]	기타

내용: 뉴질랜드는 2002년 에너지 효율(에너지 사용 제품) 규정을 개정하여, 65kW 초과 냉난방기/히트펌프, 세탁기, 식기세척기, 회전식 의료건조기, 가정용 냉장·냉동고, 3상 케이지 유도 전동기, 외부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MEPS(최소에너지효율표준) 및 MEPL(에너지효율라벨표기규정) 요건을 도입 또는 업데이트하였다.

이러한 변경사항은 트랜스태즈먼 장비 에너지효율(E3)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정책 결정을 시행하고, TTMRA(트랜스태즈먼 상호인정협정)를 지원하며, 국제적 우수 사례와도 일치한다.

¹ 최종 조치 및/또는 관련 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